

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안내

반기별 지급 신청자격

- ① 소득귀속연도(2020년)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② 소득귀속연도 전년도(2019년)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액 미만(3페이지 참조)이고, 2019.6.1.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

- ▶ 근로소득 ·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,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간이 ·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반기별 지급 및 정산

- ▶ 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반기별로 지급받고,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(2021. 5월)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.

- ①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*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*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: 상반기 총급여 + (상반기 총급여 ÷ 근무월수) × 6

* 일용근로자, 상용근로자 중 종도퇴직자 : 상반기 총급여 × 2

- ②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지급

구분	신청기간	지급시기	지급액
상반기	'20.9.1.~'20.9.15.	'20년 12월 중	산정액의 35%
하반기	'21.3.1.~'21.3.15.	'21년 6월 중	산정액의 35%
정산		'21년 9월 중	추가지급 또는 환급

*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환급

신속한 심사 · 지급을 위해 신청시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.

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장려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「[모의계산\(화면 우측 하단\)](#)」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국번없이 126번(②번 누른 뒤 ④번)

검색창 [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](#)

2020년 신청

정부혁신
보다 나은 정부
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
[제도안내]

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근로장려금(EITC)·자녀장려금(CTC)란?

- ▶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·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,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▶ 2020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(소득검증)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.
 - *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는 정기 또는 반기신청(7페이지 참조) 중 선택 가능
- ▶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**지급제외** 또는 **감액될 수 있으며,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**될 수 있습니다.

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

|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|

- ▶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, 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- ▶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-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합니다.
- ▶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(배우자 포함)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|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|

구 분	적 용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	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
기한 후 신청한 경우	해당 장려금의 10% 차감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	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	지급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'총급여액 등'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(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)	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(1일 0.025%)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- ▶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(①~③)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- *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

① 소득요건

-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

[총소득 기준금액]

구분	단독가구	홀별이가구	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	2,000만원	3,000만원	3,600만원
자녀장려금		4,000만원	

- (단독가구)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(홀별이가구)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(맞벌이가구)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 - * 부양자녀는 18세 미만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),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
 - *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,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

② 재산요건

-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
 - *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

③ 기타요건

-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)일 것
-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
신청기간과 방법

- ▶ 신청기간 : (정기신청) 2020년 5월 1일~6월 1일까지
(기한후 신청) 2020년 6월 2일~12월 1일까지
- ▶ 신청방법 : 전자신청(ARS전화 1544-9944, 손택스, 인터넷 홈택스)
 - * 신청기간 중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'연간 총소득'

- ▶ 2019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(비과세소득 제외, 부부소득 합산)
- ▶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
 - 근로소득 = 총급여
 -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 - 종교인소득 = 총수입금액
 - 기타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 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
[업종별 조정률]

업종구분	조정률	
가	도매업	20%
나	소매업, 자동차·부품판매업, 부동산매매업, 임업, 광업, 축산·여업관련 서비스업, 그밖의 다른 업종	30%
다	음식점업, 제조업, 건설업, 전기·가스·증기·수도사업	45%
라	숙박업, 운수업, 금융·보험업, 상품증개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서비스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·환경복원업	60%
마	서비스업(부동산, 전문과학기술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,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예술, 스포츠, 여가, 수리 및 기타 개인)	75%
바	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	90%

근로·자녀장려금 산정방법

- ①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'총급여액 등'을 장려금 산정표*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(6페이지 참조)
 - 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「근로장려금 산정표」, 별표 11의 2 「자녀장려금 산정표」
- ②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*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.
 - * 2페이지 하단의 「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」 참조

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'총급여액 등'

- ▶ '총급여액 등'은 부부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(비과세소득과 특정 소득은 제외)
 - * 총급여액 등 = 근로자총급여액 + (사업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 + 종교인총수입금액

[연간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]

구분	소득범위	비고
연간총소득	근로, 사업, 기타, 이자·배당, 연금, 종교인	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총소득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
총급여액 등	근로, 사업, 종교인	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사용

* 재산은 가구원 합산 / 소득은 부부만 합산

'총급여액 등'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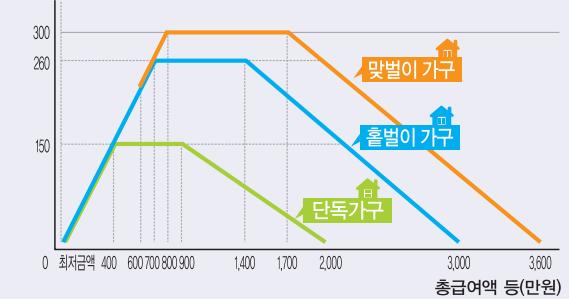
- ①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
- ③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- ④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
(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 제외)



근로·자녀장려금 산정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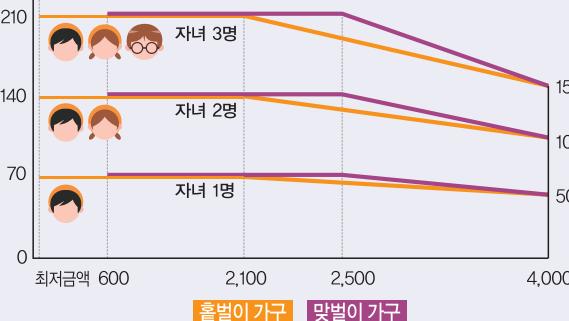
근로장려금

지급액(만원)



자녀장려금

지급액(만원)



근로·자녀장려금 상담방법

지방청별 전용 콜센터

서울청	02-2114-2199	중부청	031-888-4199
부산청	051-750-7199	인천청	032-718-6199
대전청	042-615-2199	광주청	062-236-7199
대구청	053-661-7199		

*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는 신청·지급기간에만 운영됨